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 I. 들어가며 9
- II. 소년사법과 아동의 권리 15
 - 1. 소년사법제도의 취지 15
 - 2. 소년사법제도 관련 현행법령 16
 - 1) 「대한민국헌법」
 -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3) 「소년법」 및 「소년심판규칙」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 27
 - 4.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내외권고 30
 -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2)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 III. 소년사법 체계 39
 - 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39
 -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41
 - 3.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43
 - 4. 보호처분의 취지와 종류 45
- IV. 소년사법 궁금해요(Q&A) 49

일반

- 1.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49
- 2. 19세 미만인 사람도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51
- 3.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소년의 특성이 어떻게 고려되나요? 52

보조인

- 4.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소년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나요? 56
- 5. 보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 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57
- 6. 보조인으로 선임되었어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58

우범과 통고

- 7. 우범소년이 무엇이고, 우범사건에서 특히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60
- 8. 「소년법」에만 통고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통고제도가 무엇인가요? 62

소년분류심사원

- 9.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63
- 10.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64
- 11.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무엇을 하나요? 64

재판과정

- 12.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66
- 13.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된 경우, 재판과정에서 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조인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68
- 14.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69

보호처분

- 15. 6호시설 처분과 소년원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72
- 16.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6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아동

- 17. 재판을 받는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77
- 18. 재판을 받는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78
- 19. 재판을 받는 아동이 이주배경아동인 경우 81
- 20. 재판을 받는 아동이 성폭력·성착취 피해아동인 경우 84

V. 나가며 89

부록

- 1. 소년법 93
- 2. 소년심판규칙 105
- 3. 각종 서식 사례 117
 - 3-1) 보조인선임신고서(예시)
 - 3-2) 보조인의견서(예시)
 - 3-3) 소년분류심사원 보조인접견신청서(예시)
 - 3-4) 이송신청서(예시)
 - 3-5)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예시)

I.
들어가며

I. 들어가며

사단법인 두루는 2014년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두루는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 인권,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소송과 입법운동, 공익법연구, 국제연대활동 등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2022년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의 지원을 받아 <보호 처분 대상 아동 법률지원 및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위한 입법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등을 이유로 사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내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의 폐지 및 소년법의 처벌 강화 등을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사법제도의 폐지, 축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은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회복과 사회복귀가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절차에서 소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신체의 자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소년의 권리, 특히 사법접근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소년법」에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어 성인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의 경우에도 소년이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부(법원)에 송치되는 ‘우범소년’의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였으며, 따라서 국내외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 우범소년 조항이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두루는 이 사업을 통해 수사단계에 놓인 소년 피의자를 포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소년이 있는 현장 곳곳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을 둘러싼 상황과 소년의 욕구, 특성 등을 고려해 참여자인 소년을 중심으로 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사법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호처분 대상 소년은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 밖 아동, 학대피해아동, 성착취 등 폭력피해아동, 장애아동과 이주배경아동,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루는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소년사법제도가 아동 중심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아동 당사자, 활동가, 관계종사자, 법률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대·협력하여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일련의 경험과 과정을 잘 기록하여 추후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다른 제도개선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루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더 많은 법률가와 활동가들이 아동인권, 소년사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이 확산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 매뉴얼은 두루가 이 사업과 더불어 그 동안 지원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소년사법 분야에서 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인 소년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위기청소년 등과 호명만 달리할 뿐인, 소년사법의 ‘소년’ 또한 보편적인권리를 누려야 하는 다른 아동과 다름없이 국가의 보

호, 복지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년이 사회에 다시 잘 복귀하기 위해서는 ‘소년’이라는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Juvenile Justice)’에서 ‘아동사법(Child Justice)’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사회 또한 ‘소년’이라는 용어를 점차적으로 지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매뉴얼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현행 법령 등에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년사법’,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아동, 소년의 곁을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일동

II.

소년사법과 아동의 권리

II.

소년사법과 아동의 권리

1. 소년사법제도의 취지

우리 법은 발달·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다른 소년사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기의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들은 성인범죄에 비하여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며,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라나는 시간을 존중하고 지지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년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병행하거나 독립하여 특별한 처리절차를 두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¹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아동이 신체적·심리적 발달 측면에 있어 성인과 다르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책성을 인정하고 아동을 위한 차별화 및 개별화된 접근방식의 별도 체제가 필요한 근거가 되며,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노출은 아동에게 유해하여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4호(2019), para. 2).

¹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쪽.

반사회성이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

²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쪽.

년을 교화하고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소년법』제1조)을 ‘소년보호’라고 하며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조사·심리·판단하는 행위를 ‘소년심판’이라고 합니다.²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한 심리, 양형에 관한 심리로 구성되어 있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받은 형의 선고는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반해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더 비중 있게 다루며, 보호처분의 내용 및 정도는 범죄사실의 내용 및 양형인자 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행(가출, 친구관계, 학교 재학 여부와 학교생활 등), 가정환경(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형제관계, 가정폭력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직업, 경제력, 생활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 등) 등에 더 중점을 두고 결정되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한 전과는 장래 피고인의 신분 및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즉, 소년사법제도는 ‘소년 또한 아동으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어 모든 적절한 법적 보호를 비롯해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념하여, 국가가 형법 위반의 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모든 아동이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고, 소년이 사회에 복귀하여 발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우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및 제40조 제1항).

2. 소년사법제도 관련 현행법령

1)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할 뿐, 소년사법과 관련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 또한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영장주의(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5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을 가집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제37조 제2항) 또한 당연히 소년에게도 적용됩니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20.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 9. 2에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 9. 25. 위 협약에 서명한 후 1991. 11. 20. 비준서를 기탁해 같은 해 12. 20.부터 조약 제1072호로 발효되었습니다.³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제6조 제1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보편타당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2022년 기준, 196개국⁴)가 비준한 다자간 조약이므로, 일부 기술적·절차적인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⁵ 최근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

- 3 외교부 홈페이지(외교정책-인권-국제인권규범-국제인권협약) 참고.
- 4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은 유엔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도, 관할 영토 내에 자치권을 행사하는 나라도 비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3개의 유엔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192개가 비준하였으며, 그 밖에 바티칸시국(Holy See, 1990. 4. 20. 비준), 니우에(Niue, 1995. 12. 20. 비준), 쿡 제도(Cook Islands, 1997. 6. 6. 비준), 팔레스타인(State of Palestine, 2014. 4. 2. 비준)이 협약을 비준하여 정기적인 이행보고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 [출처: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홈페이지(Depositary - Status of Treaties – Chapter IV – 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
- 5 법제처,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2022), 25쪽.

인권조례 위헌확인 사건에서 법률유보원칙의 준거가 되는 ‘법률’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앞으로 더욱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을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제37조(범죄에 연루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조치), 제40조(소년사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7조에는 형사미성년자 최저 연령의 설정,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분절차의 마련 외에도 ① 고문, 비인도적 처벌,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 ② 자의적인 자유 박탈의 금지 ③ 아동의 나이를 고려한 처우 ④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에서는 ① 죄형법정주의 ② 무죄추정의 원칙 ③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 ④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⑤ 진술거부권 ⑥ 사생활의 존중 ⑦ 대안적 처분의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년법」 및 「소년심판규칙」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제9조). 이에 비해 「소년법」은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제2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은 소년형사 사건과는 그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 및 소년보호재판(사건)의 접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의무가 있으며(제49조 제1항), 법원 또한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50조).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소년의 비행사실, 보호자 또는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보호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고지합

6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

니다[소년심판규칙] (이하 '규칙') 제9조 전단].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⁶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하며,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을 한 때에 상실합니다(제52조 제1항, 제2항).

소년부는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49조 제3항).

· 사건 분류 및 조사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며(제3조), 소년부의 보호사 건으로 심리합니다(제4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 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 치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소년부는 이러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 다(제8조).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10조). 소 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 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제13 조 제1항), 이때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합니다(규칙 제14 조 제1항).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2 항). 동행영장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규칙 제16조 제 1항).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 니다(제16조 제3항). 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 에는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제17조 제1항), 보호자나 변호사를 이미 보조인으로 선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보조인의 선 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하며,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

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됩니다(제17조 제2항, 제3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법원은 소년의 필요에 의해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 임시조치 및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3호인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위 결정은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0조).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국선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국선보조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24조).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반면,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 또한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제2항).

· 심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하며,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조사관, 보호자, 보조인 및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는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5조의2).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고(제26조),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27조).

·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그러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각 호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32조 제6항).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III. 소년사법 체계, 4. 보호처분의 취지와 종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항고

①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② 보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조).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46조 제1항). 한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45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53조).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제54조).

· 보호처분 혹은 형의 집행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공소제기, 구속, 형량 및 그 집행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49조의3).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제2항).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며(제59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

의 범위에서 장기(최대 10년)와 단기(최대 5년)를 정하여 선고하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60조 제1항, 제3항).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합니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63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제64조).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이 중에서 보호소년의 처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서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하는데, “보호소년”이란 법원소년부로부터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및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위탁소년”이란 법원소년부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을,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소로 구인된 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소년을 말합니다(제1조의2).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제35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수행되는 분류심사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합니다.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시행령 제35조 제1항). 소년원은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초·중등교육소년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 ③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의료재활소년원, ④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인성교육소년원으로 나눕니다(시행령 제3조).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28조). 소년원장은 ① 보호소년이 22세가 되거나 ②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제2항).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항).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7조 제3항).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등은 ① 남성과 여성 ②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별로 분리 수용합니다. 다만, 의료재활소년원 위탁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합니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규율위반행위를 하면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제7호의 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합니다(제15조 제2항, 제3항). 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8항).

1. 훈계
2. 원내 봉사활동
3. 서면 사과
4.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5.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6.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7.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소년사법제도 관련 현행법령에는 위에서 살펴본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및 「소년심판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외에도 주로 소년형사사건과 관련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과 관련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등 법무부령,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위탁소년 등 처우지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보호소년 처우지침」, 「보호소년 교육지침」, 「보호소년 등의 의료에 관한 분류 및 처우지침」, 「소년선도보호지침」,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 등의 법무부훈령, 「소년업무규칙」 등 경찰청예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등의 법무부예규 등이 다수 있습니다.

3.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이란 당사국이 가입 및 비준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하여,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인권 분야의 국제적 표준으로 기능하는 유엔의 각종 지침(Guideline)과 협정(Compact) 등 연성규범, 국제인권기구의 이행점검체계에 따른 권고 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⁷ 앞서 살펴본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외한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제인권규범 및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⁸

⁷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인권-국제인권규범) 참고.

⁸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2020), 142쪽;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2018), 21-54쪽 참고.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 범죄를 행한 아동의 경우에도 발달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 가능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소년의 인권 보장을 통한 사회복귀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조치의 최저기준을 제시함.
-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9개 규칙으로서 ① 소년사법의 기본이념과 목적, 규칙의 적용범위, ③ ‘지위비행’⁹과 갓 성년이 된 범죄자에 대한 확대 적용, ④ 형사책임의 최저연령, ⑤ 아동의 복리와 공정성 실현의 요청, ⑥ 종사자의 재량권 보장과 전문성 확보, ⑦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 ⑧ 낙인 예방 및 사생활의 보호, ⑨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였음.

⁹ 여기서 ‘지위비행(status offence)’이란, 성인이 행할 경우에 범죄로 간주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청소년이 행할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거나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총론적 원칙하에 소년사법 각 단계에 있어 소년의 절차적 기본권, 수사 및 기소, 재판 및 처분, 시설 외 처우와 시설 내 처우, 지속적인 조사·연구, 계획 및 정책수립과 평가의 필요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

-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종류의 구금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방지할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유엔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
- 소년사법제도는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하며,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 특히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신체의 자유 제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간동안 사용되어야 하며, 처분의 기간은 사법당국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함.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지침」(1990)

- 소년비행의 방지야말로 전체 사회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은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도주의적 인생관을 습득하고, 준법정신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소년비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인격을 존중·향상시킴으로써 조화로운 사춘기의 성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아동을 사회화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절차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혁신적인 비행방지정책과 체계적인 연구,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년 비행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입법·행정·사법·정책개발의 영역에서 분야별·영역별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음.

「형사사법체계에서 아동을 위한 비엔나 행동지침」(1997)

-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기타 국제규범의 이행 방법을 제시하면서 각 당사국이 협약 및 관련 국제문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
- 특히 출생등록·형사책임능력·아동 중심적 관점 및 독립적 전문가의 검

토 필요성·소년전문법원 및 별도의 소년보호절차·다이버전 등 대안적 조치·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시설 외 처우 중심의 원칙과 구금최소화의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10호 (2007)**

- 소년사법제도가 협약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6가지 핵심 요소로 ① 비행예방, ② 개입/다이버전(Diversion),¹⁰ ③ 형사책임 최저연령, ④ 공정한 재판 보장, ⑤ 조치, ⑥ 미결구금과 기결수감 등 자유박탈을 제시함.

¹⁰ '다이버전'이란 특정한 사건을 공식적 사회통제 체계로부터 전환시키거나 우회시켜 절차적으로 비범죄화 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사법처리절차를 중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박봉진, "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 다이버전 효율화방안", 법학연구 제54집(2014)].

-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식제고와 교육,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평가·연구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권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유엔사무총장 안내지침: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 관한 유엔의 접근방식 (2008)

-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보장,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공평한 대우 등 안내의 원칙과 아동을 위한 사법제도 체계 등 아동을 위한 사법체계에서 고려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함.
- 이때 아동은 소년사법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자·증인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모든 아동을 의미하며, 사법제도 전반에서 모든 아동들에게 국제규범과 기준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유엔 국제연구를 주도한
독립전문가의 보고서 (2019)**

- 사법행정과 관련하여 ① 모든 아동에 대한 무료 법적 조력, ② 효과적인 절

차적 보호장치, 다이버전과 비구금적 처우 우선 적용, ③ 아동의 특수한 비도덕적 행위를 범죄화 지양, ④ 형사책임의 최저연령 14세 이하 설정 금지, ⑤ 18세에 도달한 아동에 대한 성인 형사사법제도로의 자동 전환 금지, ⑥ 아동 구금시 준수사항, ⑦ 아동에 대한 적절한 최단기간 형집행 원칙 등을 권고함.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채택 일반논평 제24호 (2019)**

- 일반논평 제10호(2007)을 대체하여 채택된 것으로, 종합적 아동사법정책의 핵심요소로 ①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을 포함한 아동 범행의 예방, ② 형사책임 최저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개입, ③ 연령과 아동사법제도, ④ 공정한 재판의 보장, 관련 조치, ⑤ 미결구금과 기결수감을 포함한 신체의 자유 박탈 등을 제시하고, 아동사법제도의 조직과 인식제고 및 교육, 자료수집, 평가 및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권고함.

4. 소년사법제도 관련 국내외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19. 9. 최종견해(CRC/C/KOR/CO/5-6)를 채택하였는데 소년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상당한 내용의 권고를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정책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가 권고한 사항을 국가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살피는 일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문제점 및 권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우려사항	개선권고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과 만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는 것	—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저촉된 아동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와 처우의 두 가지 병렬 시스템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자원을 지원받아, 법에 저촉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아동사법전문법원을 설립할 것 - 아동 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계부터 보조인 개입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증거 및 항소에 대한 접근성이 부재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거나,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법률구조를 조건부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고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40조에 따라 공정한 재판 보장을 준수할 것, 아동 관련 사건의 공판에서 일반 청중을 배제하고, 재판 시작단계부터 아동의 법정 후견인 참여를 보장할 것 - 침해에 보고함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는 경로를 제공·증진하고, 아동 관련 사건을 위한 언론보도 지침을 수립할 것 -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 구조 제도를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에 비해 높은 아동 구금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버전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구금형을 촉진할 것 - 「소년법」에 구금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할 것, 구금은 종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 “보호처분” 기간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이 최종 형기에 산입되도록 보장할 것 - 구금에 항소할 권리 및 부당한 구금에 대한 배상권을 보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형 조치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비구금 조치를 강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방 감금, 가족방문 제한 및 원거리 징계이송과 같은 재량에 따른 징계조치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신실 및 이송을 징계적 조치로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회복적 조치로 대체하고 촉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과 아동을 혼거수용하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성인과 함께 구금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전기충격기를 포함한 기타 보호장치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관한 무력 및 보호장비 사용을 규제할 것 및 그러한 사용이 특정한 상황에 제한되고 비례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 수용, 불충분한 의료 지원, 교육, 훈련, 여가, 식사 제공, 특히 여아에게 적게 제공되는 식사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구금 환경; 접근, 진정 및 야외활동 제한; 소수자 아동을 위한 합당한 편의 부재, 구금된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구금을 포함하여, 구금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개인 공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음식, 교육, 신체적·심리적 건강 서비스, 운동, 여가, 가족과의 접근 및 진정 제도 등 제공) -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것 -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된 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DNA 및 HIV 의무검사 - HIV 아동 구금자의 격리 - 구금된 아동에게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된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 구금된 아동의 DNA 수집 및 HIV 검사를 금지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할 것 - HIV 정보는 비밀을 보장할 것 - HIV에 감염된 아동 구금자를 격리하지 않을 것 - 강제적인 신체검사와 이발, 그리고 지속적인 위생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범소년”에 관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폐지할 것

2)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소년분류심사원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 6.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¹¹

¹¹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2019. 6. 26.자 결정,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1. 소년분류심사원이 분류심사기능에 집중하고 위탁소년들의 위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①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을 분리하고, ②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③ 현재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요보호아동¹², 우범소년, 임산부, 외국인, 저연령아동, 성소수자, 경미한 지적·정신장애아동 등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것
3. 위탁소년에 대한 징계 기준과 이의제기를 포함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규정화할 것
4. 위탁소년의 정확한 비행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위해 위탁소년에 대한 분류심사 상단을 강화하고, 관련 직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위탁소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체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여 모든 분류심사원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6. 위탁연장시 연장 사유, 기간, 이의제기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바탕으로 2021. 7. 다음과 같이 소년사법제도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¹³

¹² ‘요보호아동’이란 보통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제3조 제4호).

¹³ 국가인권위원회 2021. 7. 12.자 결정, “소년사법제도 개선 권고”.

우려사항	개선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제도는 아동의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및 제214조의2 제10항 등은 구속전피의자 심문 또는 체포·구속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만한 재력이 없는 소년은 소년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소년보호 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이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할 것

<p>— 이러한 문제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국선보조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이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재판에 해당해야 필수적으로 선임되며,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적으로 선임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p>	
<p>— 우범소년 규정은 명백한 범죄이지 않더라도 ‘지위비행’ 또는 ‘비행의 가능성이 있음’ 등을 이유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규범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유도 불명확하며, 통고제도와 결합하여 오·남용될 수 있는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함.</p>	<p>—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p>
<p>—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로서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p>	<p>— 「소년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p>
<p>— 그런데 「소년법」 제18조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년부 판사의 해석에 따라 소년의 임시조치 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그럼에도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다룰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과는 달리 존재하지 않아, 소년의 입장에서 부당한 임시위탁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 임시조치 대상은 아직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이라는 점, 임시조치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같은 경우 일정기간 소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 소년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p>	

- 「소년법」 제55조 제2항은 분리구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구속된 소년은 성인과 분리수용 되어야 함.
- 이러한 원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도 나타나는 바,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함.
- 그런데 위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아동과 성인이 함께 구치소에 수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소년과 성인이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됨.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복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개정안이 거듭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촉법

소년 연령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서 처벌 강화 기조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시금 2022. 9.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 내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¹⁴

¹⁴ 국가인권위원회 2022. 9. 26.자 결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표명”.

III. 소년사법 체계

III.

소년사법 체계

1.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우리나라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¹⁵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은 관할이 분리되어 있고, 판사가 각각의 절차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의 성격도 완전히 다릅니다.¹⁶ 「소년법」도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규정(제2장)과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사건의 특칙(제3장)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제도를 일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¹⁷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이를 검사선주의¹⁸ 라고 합니다. 검사는 소년보호

¹⁵ 오영근 외 15, “소년법 조문해설서”, 박영사(2021), 7쪽.

¹⁶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2014), 3쪽.

¹⁷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2014), 3쪽.

¹⁸ 먼저 심의한다는 뜻의 선의(先議).

사건 송치나 소년형사사건 기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불기소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여 수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¹⁹ 다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고(「소년법」 제4조 제2항), 보호자나 학교, 아동양육시설, 보호관찰소의 장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¹⁹ 오영근 외 15, “소년법 조문해설서”, 박영사(2021), 7쪽.

(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구분

소년보호사건	분류	소년형사사건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또는 단독)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강한 성장	목적	실체적 진실발견
보호처분결정	최종결론	형사처벌(또는 무죄 판결)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고 아동발달과 회복의 관점에서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을 내립니다. 흔히 말하는 소년원에 가는 것은 이 보호처분의 하나(「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0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보호사건을 소년형사사건보다 가벼운 것으로 인식하지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은 각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사건의 결과가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의 공범이 형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소년부에서는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구금적 처우인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소년을 수사한 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소년들은 형사법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특별형법 규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던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도 조사 및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다만 소년형사사건에는 「소년법」 제

3장의 규정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에는 조건부기소유예(제49조의3), 부정기형(제60조 제1항),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제59조)와 같은 특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년과 보호자 등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은 형사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거나,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의 공범이 있는 경우, 연령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각각 나뉘어 적용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의뢰인인 소년이 자신에게 적용된 절차를 납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초반부터 사건 진행 중 여러 차례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여 자신이 현재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는 실무적으로는 의뢰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년이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2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6편 아동의 권리”(2018), 104쪽.

「소년법」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아래와 같이 유형을 셋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각호).

(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²⁰

분류	정의	연령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행위시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19세 미만
촉법소년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행위시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처분시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을 말합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죄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이 정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또한,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제9조), 「소년법」은 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므로(제2조), 행위시에는 만 14세 이상이고 보호처분시에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범죄소년은 검사의 수사결과와 판단에 따라 소년형사사건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상 형사미성년 연령인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소년법」은 그보다 더 낮은 만 10세부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소년보호사건으로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의 결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만 10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²¹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²²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중 하나 이상의 우범사유가 인정되는 동시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우범성)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우범소년은 보호처분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인 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우범소년 규정은 우범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범죄 실행이 없이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찍히는 낙인, 성인이라면 처벌되지 않았을 우범사유, 복지적 행정처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자세한 내용은 Q&A 8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²³

²¹ 김희진, “아동인권”, 들녘(2019), 172-173쪽.

²² 굳어진 성질이나 버릇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²³ 오영근 외 15, “소년법 조문해설서”, 박영사(2021), 48-51쪽.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국제사회

최근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0호를 수정·발전시킨 일반논평 제24호를 통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CRC/C/GC/24, para 22.). 소년사법의 문제는 연령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수성과 회복가능성을 이해하고, 국제인권규범을 고려해야 하며, 처벌보다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²⁴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 9.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법률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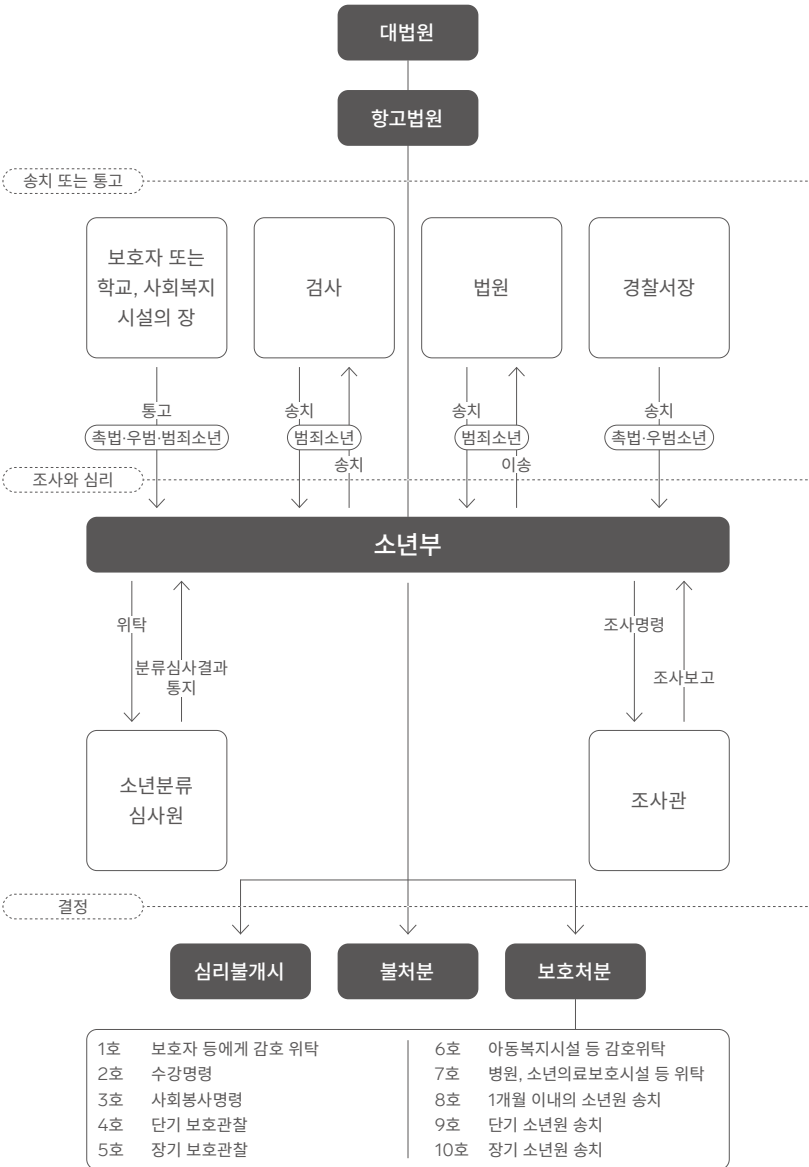
무엇보다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소년사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나 재범이 늘어나고 관련된 소년의 연령이 낮아진다는 우려들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통계에 기반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분석이 우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법을 위반한 원인,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없이 연령과 엄벌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해결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²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연구”(2018), 327쪽.

3. 소년보호사건의 절차

소년보호사건은 사건의 접수(경찰서장·검사·법원의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 사건의 분류 및 조사(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 등) → 심리개시결정 → 심리 → 보호처분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²⁵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5쪽.



4. 보호처분의 취지와 종류

헌법재판소는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취지에 대하여, “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개선가능성이 크고 사회의 비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년법」으로 규율하고 있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8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

「보호소년 교육지침」(법무부훈령 제1400호)도 소년원 교육의 기본이념을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비행성향을 교정하는 것”(제3조 제1항) 이라고 하여, 보호처분의 목적이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응보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특히 보호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때 소년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보호소년교육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소년이 위 취지에 부합하는 보호처분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되, 취지에 반하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각 처분은 필요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각호). 이에 소년부 판사는 병합을 통해 개별 소년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조합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표) 보호처분의 종류²⁶

종류	내용	기간	연령
사회내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범위에서 연장 1회 가능) 이내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범위에서 연장 1회 가능)	10세 이상
주거제한처분			
6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1회 가능) 이내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1회 가능) 이내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²⁶ 한영선 외2, “소년법 강의” 술과학 (2020), 229쪽.

IV.

소년사법 궁금해요(Q&A)

IV. 소년사법 궁금해요(Q&A)

일반

1.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표)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주요 차이점

분류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목적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보장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
대상	14세 이상의 피고인	10세~19세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²⁷
재판의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검사의 출석 여부	검사 출석	불출석(검사가 항고할 수 없음)
심리의 대상	범죄사실	비행사실, 보호의 필요성 (범죄적 위험성, 교정가능성, 보호상당성)
미결구금 시설	구치소	소년분류심사원
종국 형식	판결	심리 불개시 결정, 보호처분 결정, 불처분 결정, 검사에의 송치 결정
전과 여부	전과가 됨	전과가 되지 아니함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개선되도록 조력하는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은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입니다.²⁷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법」 제1조). 반면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사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 그에 합당한 형벌을 정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의미합니다.

²⁷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I. 소년사법체계, 2.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참고.

²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 - 소년보호) 참고.

²⁹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2014), 3쪽.

³⁰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768 결정, 반대 의견 참조.

소년보호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복지적·행정적 기능도 갖지만,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하므로 사법적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²⁹는 점은 형사재판과 같습니다. 특히 보호처분 중 소년원 수용처분의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사재판에서 정해지는 형사처벌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³⁰ 사회 내 처분과 사회 외 처분의 중간처우로 일컬어지는 ‘6호 처분(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또한 지역사회와 분리된 집단시설에서 통제된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구금과 다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질문 15. 참조).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조 제6항).

2. 19세 미만인 사람도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는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의 취급에 있어서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재판을 하는 법원과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아동은 형사재판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먼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이 불가능하며(「형법」 제9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건을 맡은 검사가 소년에게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무엇이 적합할지 결정할 일차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형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기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공범인 경우에도 한 사람은 형사재판을 받고 다른 사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소년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0조). 반대로 소년법원이 심리 도중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소년법」 제7조 제2항). 이때 ‘19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아동이 사건 접수시에 19세 이상이었거나 심리시에 19세 이상이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³¹ 「소년법」 제7조의 사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되면 소년보호사건은 종결되며 아동은 형사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³¹ 한명선 외 2, “소년법 강의”, 슬과학 (2020), 226쪽.

한편,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소년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실제적 진실을 다루기 어려운 소년보호재판보다는 형사재판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범죄를 행하거나 범죄상황에 연루되는 등 소년의 주변환경 요인과 가정의 보호력 등을 살펴, 가정에서 아동을 적절히 돌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범죄의 실행 여부나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을 신뢰하며 자신만의 자아정체성을 갖춰나가야 할 아동기를 손상시키며,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여러가지 특수한 규정들이 있더라도 사법재판이라는 특성상 아동 친화적이지 못한 공간과 구조, 절차도 아동에게 더 낫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형사범죄 위반에 관한 수사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경우,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우려와 영향, 예측되는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안내하고, 소년 및 보호자, 그리고 수사 및 재판 절차 관계자와 함께 상의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을 모색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년사법제도는 아동과 미래의 아동에게 더 필요한 국가적 조력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소년의 특성이 어떻게 고려되나요?

소년형사사건은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소년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수사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어떤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성인의 구속사유와 별다른 차이점 없이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

용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5조 제2항).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①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②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활동 등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이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재판

소년형사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82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8조). 즉,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특성과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소년법」 제58조).

형선고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59조).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다만 「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경우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인지는 범죄 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년감경: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소년에게는 「형법」상 작량 감경과 별도로 한 번 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입니다.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그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2조 본문).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던 때에는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2조 단서, 「형법」 제57조).

형집행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합니다(「소년법」 제63조 본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3조 단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소년법」 제64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5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형·무기형의 완화로 인한 15년의 유기징역 또는 부정기형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합니다([소년법] 제66조).

4.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소년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나요?

소년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4항).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소년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는데, 이를 ‘국선보조인’이라고 칭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은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어 소년을 변호하는 자에 대해 ‘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선보조인은 재판 단계에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을 조력하는 보조인이 없을 때에 필수적으로 법원이 선정하게 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임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

소년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따르므로, 소

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는 한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이 소년형사·보호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법적·관행적으로 법에 저촉된 모든 소년에게 조사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제도를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으며[CRC/C/KOR/CO/5-6, para. 46. (d), 47. (d)],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21년 소년형사사건은 범피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소년보호사건은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조사가 시작될 시점부터 국선변호인·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참고로, 국선보조인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는 각 법원은 정해진 시기에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국선보조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보호를 위해 국선보조인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소년부에 그 필요성을 내용으로 국선보조인 선임요청서나 관련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선보조인의 지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나요?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 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보조인은 가정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 선임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개시 결정을 할 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소년법」 제20조 제2항).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조인은 형사절차의 변호인과 비슷한 임무를 맡지만,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교사, 청소년전문상담기관 교사, 상담전문가 등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소년의 보호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형사절차의 변호인은 아니지만 일단 보조인으로 선임되고 나면 그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소년법」 제17조 제6항).

보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고(「소년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심리기일의 변경을 청구하거나(「소년법」 제22조)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기록·증거물 열람·등사권(「소년법」 제30조의2), 항고·재항고권 등(「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제1항)을 가집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으나, 심리 개시 결정 이후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소년법」 제30조의2).

소년보호재판은 사법적 기능과 동시에 일반형사재판과 달리 복지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인에게는 적정절차의 이행을 감시하고 요구하는 변호인으로서의 역할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부의 협력자적 역할이 함께 요구됩니다.³² 대법원도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따라서 보조인은 소년이 한 행동, 가정·교육환경, 처해진 상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소년의 편에서 소년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소년을 위하여 유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보호절차의 취지에 반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³³ 소년사법은 ‘응보’가 아닌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범죄혐의를 받거나 기소 또는 유죄가 인정된 모든 아동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심을 강화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

³²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87-88쪽.

³³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88쪽.

6. 보조인으로 선임되었어요. 주의할 점이 있나요?

국선보조인이 아닌 이상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 다만, 소년의 보호자나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소년과 보조인이 연명날인한 서면(보조인선임계)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면에 소년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 제5항). 따라서 항고나 재항고를 할 때는 보조인선임계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소년보호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인(보조인)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자동으로 보호사건의 보조인으로 되거나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자동으로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조인을 선임하는 주체인 소년은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보조인 선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부록 3-1. 보조인선임신고서(예시) 참고).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친권자이나, 친권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소년보호사건은 심리가 매우 짧게 진행되고 단 한 번의 기일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한 부정확한 진술이나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소년은 수사단계에서 사실이나 의견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크고, 어떤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조인이 되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신뢰관계자 동석 등의 방식으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우범소년이 무엇이고, 우범사건에서 특히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인정되는 동시에,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중 앞 3가지 행위를 '우범사유'라고 부르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를 '우범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범소년의 구성요건은 우범사유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서, 우범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우범사유는 형식적인 태양으로 볼 수

³⁴ 오영근 외 15, "소년법 조문해설서", 박영사(2021), 48쪽.

있고, 우범성은 우범사유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나 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개개의 우범사유를 검토할 때는 우범성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즉 우범성이 인정되는 우범사유여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반

대로 우범성이 없는 우범사유로는 보호처분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³⁴

우범소년으로 송치되는 소년들의 몰려다니거나,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이면에는 보호자의 돌봄이 미치지 않거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우범성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므로 소년이 왜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소년 주위의 환경을 살펴 적절한 개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범사유로 재판을 받는 소년에게는 ‘형사적 제재’보다 ‘복지적 지원’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는 국내외의 목소리

1990. 12. 14.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리아드 가이드라인)」은 소년에 대하여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년의 행동에 대하여 범죄시하고 형벌화하는 것을 삼갈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며(A/RES/45/112, para. 5),³⁵ 성인이 했을 경우 범죄로 인식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행위(이른바 ‘지위비행’)라면 소년에게도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도록 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A/RES/45/112, para. 56).

2019. 10.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이 아동인권상황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CRC/C/KOR/CO/5-6, para. 47).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10호(2007), 제24호(2019)를 통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우범소년 규정, ‘지위비행’ 규정을 철폐할 것을 반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CRC/C/GC/24, para. 12., CRC/C/GC/10, para. 8.).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7.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복지적 차원의

³⁵ 김지혜, “가출의 비범죄화- 소년법상 가출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소년보호연구 제23호(2013), 42쪽.

지원방안 및 보호대책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도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으며,³⁶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도 2020년 같은 취지로 우범소년 규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³⁷

³⁶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2016. 11. 24.자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³⁷ 연합뉴스, "'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소년보호혁신위, 폐지 권고"(2020. 12. 30.) 참고.

8. 「소년법」에만 통고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통고제도가 무엇인가요?

'통고'란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알려 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³⁸ 법원실무재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116쪽.

³⁹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소년보호] 참고.

(「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교육적·예방적 차원에서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³⁸ 법원은 통고제도에 대하여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및 학교의 감독과 교육, 법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³⁹

통고의 대상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우범소년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우로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불법적·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체포, 구속 및 구금은 법률에 따라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9. 소년분류심사원이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소년을 위탁하며 분류심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분류심사란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할 목적으로 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다만 형사절차의 미결구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첫 기일에서 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나, 검사 또는 형사법원에 의해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또는 동행영장에 의해 소환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도착 24시간 내에 위탁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2항).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포함한 임시조치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의 경우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소년원이 분류심사원을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이 전문화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심사원 위탁 자체로 낙인감을 경험하는 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10.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어떤 경우에 가게 되나요?

「소년법」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위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측면이 강한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① 소년이 행한 비행 또는 범죄가 비교적 중대한 경우, ② 소년이 보호사건에 여러 번 회부되었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③ 보호관찰기간 도중 도주한 경우, ④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무엇을 하나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분류심사관이 소년에 대한 조사, 상담, 검사 등을 수행합니다. 건강상태 진단, 면접, 표준화검사, 생활·행동 관찰 등을 통해 소년이 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진단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다 면밀한 검사, 정신의학진단, 현지조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심사관은 이렇게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분류심사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① 신상관계
 - 소년의 인적사항, 학력, 지니고 있는 문제, 비행의 개요, 비행 이력, 보호자 및 가족상황, 그 밖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 ② 신체적 측면
 - 소년의 건강상태, 신체특징, 결함 여부 및 병력 등의 진단
- ③ 심리적 측면
 - 소년의 지능을 중심으로 한 능력, 성격의 특징, 신경증·정신병

등 정신기능의 장애 여부, 적응 및 욕구, 자기개선 의지 등의
측정

④ 환경적 측면

－ 출생 이후 현재까지 소년의 가정·학교·사회생활 등의 조사

⑤ 행동특징

－ 수용생활 및 검사·면접할 때 등 소년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특이사항 및 경향의 관찰

⑥ 그 밖의 참고사항

분류심사결과는 실무상 심리기일 직전에 법원에 송부됩니다. 분류심사결과
통지서에는 소년에 관한 기본사항, 환경조사, 행동관찰, 심리적 특성, 비행분
석, 분류심사관 의견, 처분의견 등이 담겨 있어 판사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
정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⁴⁰ 따라서 보조인은 소년이 분류심사원
에 있는 동안 면회 등을 통해 소년이
분류심사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점(벌점)을 받았는지, 분
류심사관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
지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⁴⁰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42-49쪽.

분류심사결과 통지서가 가정법원에 송부된 뒤라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
아 이를 열람·등사하거나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0조의2).

12.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 ① 접수 ② 신건 분류 및 조사 ③ 심리개시 결정
④ 심리 ⑤ 보호처분 결정 ⑥ 항고

소년보호재판은 사건의 접수, 신건의 분류와 조사, 심리개시결정과 심리, 보호처분 결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① 사건의 접수는 경찰서장 내지 검사의 송치, 형사부 법원의 송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접수된 사건은 분류되어 법원 소년(전문)조사관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상담조사 등), 심리상담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③ 소년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심리 개시 결정은 사건 본인인 소년과 보호자에게 심리를 개시하는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통지됩니다.(「소년

법] 제20조). 심리 기일이 지정될 경우 소년과 보호자가 소환되며,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도 심리 기일이 통지됩니다(「소년법」 제21조).

④ 소년보호재판은 심리과정 자체가 교육적·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해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요식성과 엄격성을 없애고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심리가 진행됩니다.⁴¹ 심리기일에는 소년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국선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24조). 심리 과정에서 심리상담조사나 화해 권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보호와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비공개 원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소년법」 제24조 제2항),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소년법」 제32조 제6항), 전과로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도 소년부 판사에 의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는 경우 외에는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잘 포착해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같은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이나 관련 보호사건들은 될 수 있는 한 한꺼번에 심리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소년심판규칙」 제25조 제2항).

⑤ 통상적으로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보호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친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국결정을 고지합니다.⁴² 첫 심리기일에 종국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은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소년에 대한 체포, 구속 및 구금(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기간 포함)은 최단 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소년부 판사는 종국결정으로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고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⁴¹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224쪽.

⁴²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249쪽.

⑥ 사건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 등의 (변경)결정에 대해 원심 소년부에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다만 이때,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소년법」 제46조).

13.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된 경우, 재판과정에서 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조인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국선보조인은 보호자와 소년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한 차례의 심리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기일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조인 의견서에는 비행·범행사실의 인부와 그 경위, 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태도와 보호계획, 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에서의 생활, 교우관계, 소년의 태도와 개선의지 등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 내지 보호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과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조인은 소년의 반성문과 보호자의 향후 보호계획을 담은 탄원서,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학교 선생님이나 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 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범행사실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할 수 있을 지에 관해서도 소년, 보호자와 긴밀히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⁴³

소년사건에서 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

⁴³ 한영선 외2, “소년법 강의” 술과학 (2020), 197-203쪽.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는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소년을 감호하는 자를 말하며, 대체로 부모나 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년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를 지정하여 위탁하기도 합니다. 1호 처분은 6개월간 위탁할 수 있지만,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2호 처분

수강명령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소년법」 제33조 제4항)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⁴⁴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32-333쪽.

⁴⁵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32쪽.

⁴⁶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33쪽.

수강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 유형⁴⁴

- ① 본드·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 ②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범죄를 범한 경우
- ③ 심리·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성범죄 등)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소년법」 제33조 제4항)의 시간 동안 각종 봉사활동, 환경미화 등 근로봉사를 무보수로 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 소년 대상자 유형⁴⁵

- ①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 ②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 ③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 ④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 ⑤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 ⑥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유형⁴⁶

- ①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 ② 상습적이거나 심한 폭력 또는 성적 도박에 의한 범죄를 범한 경우
- ③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경우
- ④ 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공안범죄를 범한 경우

4호 및 5호 처분

단기(1년) 보호관찰 및 장기(2년) 보호관찰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1년 또는 2년 동안 학교 및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⁴⁷를 받도록 명하는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 방법입니다. 보호관찰처분을 할 경우 최대 3개월 간 상담 또는 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최대 1년 간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4호 및 5호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져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소년은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47 돕고 보살펴 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6호 처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7호 처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0세 이상의 의료적 처우가 필요한 소년을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의료보호시설(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처럼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기간은 6개월이고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1개월 이내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하여 보호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수용경험이 없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설 내에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생활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9호 및 10호 처분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및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는 10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강제적인 보호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단기는 6개월 이내, 장기는 2년 이내의 처분입니다.

이상의 처분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여러 개를 병과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표) 일부 또는 전부 병합이 가능한 각 처분(「소년법」 제32조 제2항 각호)

1.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 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 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 제5호·제8호 처분

15. 6호시설 처분과 소년원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6호 처분 시설은 사적 시설인 반면, 소년원은 공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흔히 6호 처분을 순수한 사회 내 처우와 소년원 송치 처분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중간처우’라고 말합니다.⁴⁸ 6호 처분 시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아동보호 치료시설(제52조 제1항 제3호)인 경우가 많습니다.⁴⁹ 따라서 6호 처분

⁴⁸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50쪽.

은 소년원과 같은 국가시설 수용이 소년에게 주는 충격과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국가시설 수용에서 생기는 범죄학습과 낙인의 효과를 줄이고 사회생활과의 단절을 줄여 재사회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⁵⁰

⁴⁹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⁵⁰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50쪽.

소년원 처분과 달리 6호 처분 시설 대상소년으로는 ① 비행정도가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소년으로서 사회에 방치한다면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② 소년이 이미 4호나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개선가능성은 있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아직 9호나 10호의 처분전력은 없지만 비행 정도가 높아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다소 온정적인 보호에 의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⁵¹

6호 처분 수탁기관은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 법원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및 제5항), 6호 처분 수탁기관은 대부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 해당합니다(제52조 제1항 제3호 가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6호 처분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⁵²

⁵¹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51쪽.

⁵²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52쪽.
 법원실무제요 소년(2014)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6호 처분 시설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 주요 6호 처분 시설 현황

보호기관	수용성별	전화번호	주소
보호치료시설효광원	남자	042-271-7053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
살레시오청소년센터		02-832-50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70번길 7
로템청소년학교		043-651-7732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로 13길 37
나사로 청소년의 집	여자	031-867-6464	경기도 양주시 남면 휴암로 365-80
마자렐로센터		02-832-579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93
희망샘학교	남, 여	063-562-2811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학천로 267-16

소년원은 특별히 필요한 법률·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를 대내외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등). 한편, 소년원의 대내외 공식 명칭을 ‘학교’로 지칭하도록 한 이유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기관명에 따른 차별과 낙인을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학교’보다 ‘소년원’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아동권리에 기반한 소년사법체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다소 부족합니다. 일부 소년원에서만 초·중등 교육과정이 제공되어, 범죄 내용 및 기존의 거주지, 수용 현황 등에 따라 송치된 소년원에서 의무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이 그 자체로 아동의 일상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아동의 교육권과 개별적 성향, 인적관계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재판부가 보호처분 결정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보조인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 처분의 경우 보통 장기 보호관찰 처분(5호)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 소년은 전주소년원에(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처분받은 경우에는 제주소년원), 여자 소년은 청주소년원에 수용되며, 교육은 신입자교육에 이어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순으로 받게 됩니다.⁵³

9호와 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긴 기간동안 자유가 구속되는 가장 강한 처분입니다. 현

⁵³ 법무부 소년보호과, “2021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2020), 26쪽.

⁵⁴ 법무부 홈페이지(범죄예방정책국 소개-소속기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참고.

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은 10곳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⁵⁴ 여자 소년은 청주소년원과 안양소년원에 수용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은 서울·전주·안양·대구소년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표) 소년원 현황

기관	교육과정 ⁵⁵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한식조리, 헤어디자이너) - 인성교육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응집, 제과제빵, 헤어디자이너) - 인성교육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9호), 케이크디자이너(9호)] - 인성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에너지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9호)] - 인성교육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 인성교육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 - 의료재활교육(7호 처분자, 9·10호 처분자 중 의료재활처우소년, 심신건강증진소년⁵⁶)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이너, 제과제빵, 예술분장(9호), 커피바리스타(9호)] - 인성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피부미용, 제과제빵) - 인성교육

⁵⁵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법무부 소년보호과, “2021 소년보호기관 교육계획”(2020);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2014), 366-367쪽.

⁵⁶ 대전소년원 외에도 심신건강증진 소년이 있을 경우 전국 소년원에서 의료재활교육이 진행됩니다.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그래픽디자인(9호), 디저트(9호)] - 인성교육
제주소녀원 (한길정보통신학교)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 - 인성교육

16. 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년 본인, 그 보호자 또는 보조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판사가 내린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 관하여 7일 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다만 이 때 ①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②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③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항고가 인정된다(「소년법」 제43조 제1항)는 점을 소년과 보호자에게 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7조 제1항). 다만 항고를 하더라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6조). 한편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불처분 결정은 설사 그것이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비행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고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9. 20.자 2003트2 결정).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아동

소년 또한 헌법에 따라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제11조 제1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 또는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제2조). 그리고 당사국 내 모든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하지만 법과 제도, 정책의 미비로 특히 학대 등 범죄피해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은 소년사법 현장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소년사법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까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7. 재판을 받는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을 진행 중인 소년과 면담을 하다보면, 이들이 학대피해아동인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지만(제10조 제2항 참조), 모든 국민은 누구나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소년보호사건이나 그 배경, 소년이 마주한 현재의 상황 등이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나 상처와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피해경험에 대한 치료나 양육 환경의 개선 등을 시도하여 소년의 환경과 품행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인은 소년의 학대피해 경험이 현재의 사건이나 행동, 상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의 회복과 발달을 위해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학대피해 경험이 소년보호사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고려되어야 하는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소년의 아동학대사례를 관리하는 관할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소년이 상담한 적이 있는 상담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 재판을 받는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인 장애아동 역시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법 지원제도와 소년보호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지원에 대하여 나누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법지원제도⁵⁷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그리고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⁵⁷ 장애인의 사법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원행정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0) 참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33조 제1항 제4호, 제5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3조의2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을 받는 피의자(제244조의5), 공판에서 신문을 받는 피고인(제276조의2)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 제4항, 제7항).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담당 재판부에게 지원 및 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판결문 등의 점자문서 제공,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와 기구,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내용이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거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⁵⁸

58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재판지원 - 장애인 사법지원) 참고.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의 특수성에 입각한 고려를 제공하는 내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지원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보호재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소년보호절차 전반에 있어서 보호소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특히 보호소년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사법 지원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도 장애를 고려한 규정은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제17조의2 제2호)이 유일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하는 이유로 장애인인 형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소년보호 절차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 보호처분 집행단계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한 충분한 권리 보장과 사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인 소년은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2항).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3항) 수사 과정에서 장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아닌 다른 장애유형의 소년의 경우 전담 수사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소년의 장애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를 고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인 보호소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인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과 조사 등 임시처분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⁵⁹ 보호처분의 집행 단계에서도 장애를 고려한 처분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각 처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⁵⁹ 김예원 외1, “장애인 소년보호사건 사법지원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9권 제2호(2019), 19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소년사법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된 모든 아동을 국적, 장애,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CRC/C/KOR/CO/5-6, para. 47).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9호(2006)에서 장애아동의 높은 취약성을 고려하여 법과 충돌하게 된 장애아동은 ① 경찰, 대리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검사 및 판사 등과 같이 관련 분야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에 의해, 적절한 언어 및 여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접견되어야 하고, ② 각국 정부는 사법절차의 이용을 회피하기 위해, 아동의 개인적 역량과 능력을 참작해 조정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 요컨대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춘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며, ③ 미결구금이나 처벌을 목적으로 정규 소년원에 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이 장애인일 경우 아동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 때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호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9. 재판을 받는 아동이 이주배경아동⁶⁰인 경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에 노출되기 쉬우며, 일반적으로 한국인 아동이 받는 보호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재판 이후 쉼터나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재판의 결과 및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아동의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⁶⁰ 이 글에서 '이주배경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을 의미합니다.

1) 체류자격의 확인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아동과 미등록 아동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외국인등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이러한 아동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출입국 당국에 알려지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통보의무를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람, 즉 미등록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의 장 등은 소년이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2항). 한편, 법무부는 이주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등록 아동에 대해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아동이 퇴원 즉시 강제퇴거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학교를 다니는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다방면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되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주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⁶¹

⁶¹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345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및 비자포털(www.visa.go.kr)에 방문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 등록되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주요 체류자격

체류자격	대상	건강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
D-4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가능	불가
F-1	- F-4, H-2 소지자의 미성년자녀	가능	예외적으로 가능
	- 난민인정자(F-2)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	가능	예외적으로 가능
F-2	- 국민, 영주권자의 외국인자녀	가능	가능
	- 난민인정자	가능	가능
F-3	- D-2, E-7 소지자의 미성년자녀	가능	불가
F-4	- 외국국적동포	가능	불가
F-5	- 영주권자	가능	가능
G-1	- 난민신청자	직장가입만 가능	불가
	- 인도적체류자	가능	불가
	- 기타(치료 등)	불가	불가

2) 이주아동과 기초생활수급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아동복지법」은 적용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주아동들은 이러한 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대부분의 이주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한국 국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병원 등에 위탁되는 이주아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 등 절차에 관여하는 자 및 기관에 미리 알리고 처분 전후 소년의 거취가 사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주아동과 통역

소년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통역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도 통역에 대한 규정은 수사부터 공판 단계까지 통역의 지원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를 사귀며 한국어 사용환경에 노출된 소년에 비해 부모 등 보호자가 오히려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자에 대한 통역 지원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외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있거나 기타 보호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보호자의 교육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관련 기관 등에 보호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요청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소년이 회복하여 사회에 잘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 재판을 받는 아동이 성폭력·성착취 피해아동인 경우

성폭력·성착취 피해아동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다는 사유 등이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우범사유로 경찰서장에 의해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보호자 등에 의해 관할 소년부에 통고되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라 할지라도 피해범죄사실과 별도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년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년은 여러 사법절차를 겪으면서 본인이 피해자의 지위인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의 지위인지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로 인한 도움을 주변에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도리어 숨어버리거나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와 피해가 가중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아동이 성폭력·성착취 피해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필요한 적절한 사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인과 달리 처벌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비차별원칙, 법률유보원칙과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규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조인은 성폭력·성착취 피해아동의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이 일방적인 처분 대상으로 취급당하지 않도록 의견서 제출, 의견 개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소년사법제도의 목적과 법령의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과 권고사항, 소년사법의 체계와 흐름을 간략히 소개하였고, 소년보호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실무상 쟁점에 대해 Q&A 형식으로 설명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높은 재범률 등을 이유로 최근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내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의 처벌 강화, 더 나아가 소년사법제도의 폐지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여론 지형도 아동 중심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보다는 강력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관점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루는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낙인,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일각의 흐름과 달리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라는 소년사법의 목적과 국제인권규범에 합치되지 않은 제도운영이 근본적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응보적 관점에 기반한 소년사법제도의 폐지, 축소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죄짓지 않고도 재판받는 우범소년, 남용되는 통고제도, 사실상 '구치소' 역할을 하는 소년분류심사원 등 몇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 우리 소년사법은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이상적 모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동중심적 관점의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가 현실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소년사법의 일선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매뉴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록

1.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

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송) ①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

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발부연월일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

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

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의 진술) 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5조의3(화해권고)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

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할 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부 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제4호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32조제1항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2조제1항제2호의 수감명령은 100시간을, 제32조제1항제3호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제3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위 처분기간은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제34조(물수의 대상) ①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2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와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의 물수는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사건 본인의 행위가 있을 후 그 정을 알고도 취득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결정의 집행)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처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보호관찰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위탁 또는 송치받을 기관 소속의 직원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

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

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조(항고장의 제출) 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

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還送)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이 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제9호·제10호 처분 상호간에만 해당한다)한다.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칙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기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분류심사관 등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① 제49조 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부 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심리의 방침) 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拘禁日數)로 본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

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刑期)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애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 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벌칙

제68조(보도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성인(成人)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부록

2. 「소년심판규칙」

[시행 2016. 12. 1.] [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9.>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변경 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 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을 제외한 결정의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및 주문 이외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
2. 법 제6조,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제3조(결정의 고지와 통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심리 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소년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에 관하여 제22조 및 법 제6조, 법 제7조, 법 제19조, 법 제29조, 법 제32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인 소년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 제3항,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및 법 제45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 방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결정 서등본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통고의 방식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고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구술의 통고가 있는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년 보호사건의 송치방식등) ①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의 참고자료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5조에 따른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소년 보호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예의 송치방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넘길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등본을 넘겨야 한다.

제9조(비행사실 등의 고지) 소년부 판사는 소년 보호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송치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소년의 비행사실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년의 비행사실
2.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 그 밖의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4.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5. 보호자는 조사,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소년보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제10조(비밀유지의무)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관계인들은 조사, 심리, 소환 또는 집행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사생활의 비밀이 소년 및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비행사실, 그 동기와 비행후의 정황 및 비행전력

2. 소년과 보호자의 교육정도, 직업,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소년의 교우관계 및 소년의 가정환경
3. 소년비행화의 경위 및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과 향후의 보호 능력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비행의 위험성과 정도
5. 소년의 심신상태
6.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이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를 넘겨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참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관의 조사보고) ①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의 보고의 전후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의 진단을 위한 조치) 소년부 판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소환의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을 송달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소년의 성명, 생년월일과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소년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소년부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중 제187조 및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은 법 및 이 규칙에 정한 다른 송달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소년의 출석) ① 법 제18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위탁된 소년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에 그 소년을 출석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받은 자가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행하는 소년원(이하 “소년분류심사원”이라 한다)인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은 소년을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 또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소년부 청사 안에서 소년을 감호하여야 한다.

제16조(동행영장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동행영장에는 법 제15조가 정한 기재사항 외에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5. 5. 20.>

제17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16조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8조(동행영장의 집행과 집행 후의 처리 등)

① 동행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동행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동행자에게 비행사실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한 일시,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행영장을 제출받은 소년부 판사는 피동행자가 동행된 경우 범인사무원등에게 그 동행일시를 동행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삭제 <2008. 6. 5.>

제19조의2(국선보조인) ① 국선보조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2.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소년부 판사는 제9조제3호의 고지를 받은 소년 및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선보조인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보조인의 선정·보수 등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조사관 등에 대한 출석요구)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의견 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심리 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소년 및 보조인의 출석권) ① 소년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조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 보조인이 심리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제25조(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 등) ①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할 때에는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동일 소년에 대한 2개 이상의 보호사건 및 관련 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2(화해권고절차의 회부) ①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기 전까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를 권고하기 위한 기일(이하 “화해권고기일”이라 한다)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는 화해권고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서면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의3(화해권고기관) 소년부 판사는 스스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화해권고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화해권고위원의 위촉과 지정 등) ① 가정법원장 또는 소년부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법원장(이하 “법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갈등해결에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거나, 법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그 밖에 소년보호사건과 연관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화해권고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조정위원규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화해권고위원”으로, “조정기일”은 “화해권고기일”로 본다.

③ 소년부 판사는 제26조의3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를 권고하게 하는 경우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화해권고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화해권고위원에게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의5(화해권고의 원칙) 소년부 판사와 화해권고위원은 소년과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구성원 등이 사건 해결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6(화해권고기일 등)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위원으로 하여금 화해권고기일 전

에 분쟁해결에 관하여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화해권고기일에 소환을 받은 소년, 보호자 또는 피해자는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위원 등 화해권고기일에 참여한 사람은 화해권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해권고기일의 소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년 보호사건”은 “화해권고”로 본다.

제26조의7(화해권고기일조서) ①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기일마다 화해권고절차에 관한 조서(이하 “화해권고기일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화해권고기일조서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리”는 “화해권고”로 본다.

제26조의8(화해권고절차의 종료) ① 소년부 판사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조사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이행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이행의 확인을 위한 심리 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화해권고의 결과를 고려할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소년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의9(위임규정) 화해권고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중 증인신문, 감정,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법 제26조, 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에 이를 준

용한다.

제28조(심리조서) ① 심리 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그 밖의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삭제 <2007. 12. 31.>

제30조(결정서 등·초본의 청구) ① 소년, 보호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절 보호처분

제31조(보호처분 결정 등의 고지) ① 보호처분의 결정을 고지할 때에는 소년 및 출석한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이행하여야 할 총 수강시간 또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과 병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에는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 특별교육을 받을 기간 및 총 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항고기간과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참고자료의 반환)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참고자료를 넘겨 받은 소년원, 보호관찰소 이외의 위탁받은 자는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소년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보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하는 위탁보호위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위탁받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법 제32조제1항제6호, 7호에 규정된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소년이 수강 또는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소년이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대안교육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을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은 소년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이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고, 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법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받는 기관 등이 소년의 보호나 보호자 특별교육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소년부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등(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장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 기 보호관찰기간의 연장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관찰을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6조(몰수결정의 집행 등) 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소년부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제37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35조에 따른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제39조(보호처분·부가처분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의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또는 부가처분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하고, 법 제18조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다.

제40조(검사에 대한 통지) 소년부 판사가 법 제38조제1항제2호, 법 제51조에 따라 이송결정을 한 때에는 이송받을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송치 또는 이송의 방식) 법 제38조제1항, 법 제49조제2항, 법 제51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 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절 항고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고의 취하) ①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과태료

제54조(과태료 통지) 법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형사사건

제55조(공판기일 지정) 재판장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최대한 빨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보조인선임신고서

사 건 절 도

보 호 소 년 ○○○(○○○○○○○-○○○○○○○○)

서울시 ○○구 ○○길 ○○-○○

위 사건에 관하여

주소 서울시 ○○구 ○○○길 ○○○

(전 화 : ○○-○○○○-○○○○, 팩 스 : ○○-○○○○-○○○○,

이메일 : ○○○○○@○○○○○.○○○)

변호사 ○○○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고 아래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20○○년 ○○월 ○○일

선 임 인 ○○○ (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 권 자 부 (인)

친 권 자 모 (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함

보 조 인 변호사 ○○○ (인)

귀 중

보조인 의견서

사 건

보 호 소 년 ○○○ (생년월일 ○○○○.○○.○○)

보호소년 ○○○의 보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다 음

1. 비행사실의 인정 여부
2. 보호소년의 비행 경위
3.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4. 보호자의 태도와 보호계획
5. 보호소년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6. 보호소년의 태도 및 개선 의지
7. 결론: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참 고 자 료

- | | |
|-----------|----------------|
| 1. 참고자료 1 | 보호소년 반성문 |
| 1. 참고자료 2 | 보호자 탄원서 |
| 1. 참고자료 3 | ○○학교 재학증명서 |
| 1. 참고자료 4 | 보호소년 중학교 생활기록부 |
| 1. 참고자료 5 | 심리 평가 보고서 |
| 1. 참고자료 6 | 담당 사회복지사 탄원서 |

첨 부 자 료

- | | |
|-----------|----|
| 1. 위 참고자료 | 1부 |
|-----------|----|

20○○년 ○○월 ○○일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

변 호 사 ○○○

(인)

○○가정법원 소년1단독 귀중

3-3. 소년분류심사원 보조인접견신청서(예시)

보조인접견신청서				
접견일자			접견시간	
○○○○.○○.○○.(○)			○○:○○ ~ ○○:○○	
성명	생년월일	사건명	국·사선별	목적
				재판준비
				재판준비
				재판준비
				재판준비
				재판준비

위 보호소년을 접견하고자 합니다.

20○○년 ○○월 ○○일

번호사 ○○○ (인)
 주소
 전화
 팩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귀하

이 송 신 청 서

사 건
보 호 소 년

보호소년의 현재 주소 및 주거지는 ○○○(서울 ○○구 ○○○)이고, 재학 중인 학교도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거주지 관할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년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송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주소 확인서 | 1통 |
| 2. 서울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 | 1통 |

20○○년 ○○월 ○○일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

변 호 사 ○○○

(인)

○○가정법원 소년1단독 귀중

3-5.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예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허	부
신청인	성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격	번호사(보조인)	소명자료	보조인선임신고서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복사 <input type="checkbox"/> 출력 <input type="checkbox"/> 복제				
사용용도	심리기일 준비				
대상기록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부	
	2022푸1234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원 복사기 <input type="checkbox"/> 신청인 복사설비 <input type="checkbox"/> 번호사단체 복사기 <input type="checkbox"/> 필사				
<p>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비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수일시	20 :		영수인		
신청수수료	<input type="checkbox"/> 500원 <input type="checkbox"/> 면제		(수입인지첨부란)		
복사/출력 복제 비용	원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162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인,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 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 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더 많은 동료 보조인을 위한
소년보호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기획 사단법인 두루
지원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집필 강정은, 곽영주, 김진, 마한얼, 엄선희, 이정주, 최정규
감수 권준희, 김희진, 박승대, 엄상섭

발행처 사단법인 두루
발행일 2022. 12. 02.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1층 (04527)
이메일 duroo@duroo.org
웹사이트 duroo.org
전화 02-6200-1853

이 매뉴얼은 아동사법 분야에서 보조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인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두루
duroo.org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2011. 12. 27

바보의나눔